

## 동물병원 관리요령

### 김의호\*

수의과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동물병원 개설에 대한 꿈을 한번쯤 가져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 꿈을 실현하고 현재 동물병원을 개설하여 동물진료업에 종사하고 있는 수의사들이 염두에 두는 것은 자신의 진료기술 배양과 축주들과의 유대관계 개선 등에 치우친 반면, 자신에게 그러한 기회를 실질적으로 부여한 수의관련 법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하겠다.

또한 수의공직자로서도 동물병원개설 수의사와의 관계는 동물병원을 처음 개설신청할 때나 개설허가 당시에 당해 동물병원에 대한 시설기준의 적합여부를 점검하는 것을 시작으로 하여 수의사법 규정에 의한 동물병원개설 신고필증 또는 동물병원개설 허가증을 교부한 이후에는 공직자와 동물병원개설자와의 관계가 아니라 같은 분야를 전공한 수의사로서의 관계로 발전하게 되는 것이 보편적인 현상이라 생각된다.

수의사법에 의한 수의사의 직무는 동물의 진료 및 보건과 축산물의 위생검사에 종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를 통하여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보건 위생의 향상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말할 수 있겠다. 특히 동물병원 개설 수의사는 가축을 질병으로부터 구제하여 동물의 보건항상에 기여하며 나아가 가축의 질병이 환으로 야기되는 축주들의 경제적 손실 뿐만 아니라 심적고통을 덜어주며 또한 국민들의 보건항상에도 기여, 동물·축주 및 일반국민 모두를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하겠다. 수의분야의 공직자도 이와 마찬가지의 업무를 다루고는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수의기술행정을 주업무로 하여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관할구역의 가축방역, 검진, 예찰 등 포괄적인 업무를 공수의 등 동물병원개

설 수의사와 함께 수행하게 되며 환축에 대한 진료업무 등 세부적인 사항은 지역동물병원에 그 역할을 맡길 수 밖에 없는 설정이다.

수의사법은 법률 제412호(1956년 12월 26일)로 제정공포된 이후 2차에 걸쳐 개정 운용되고 있으나 시의성에 맞도록 개정보완 되어야 할 사항이 많은 것으로 생각된다.

모든 수의사는 수의사법에 의하여 국가면허를 소지하게 되는 것은 말할 나위가 없으며 정부에서는 수의사 관리를 위해 수의사면허대장 비치 및 전산화로 수의사 인력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그러면 수의사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동물병원과 관련된 조항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겠다.

먼저 수의사법 제2조(정의)를 살펴보면 동물진료업이라 함은 “동물의 질병을 진료 또는 예방하거나 폐수검안을 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동물병원이라 함은 “동물진료업을 행하는 장소”로서 규정되어 있다.

제10조(진료업무)를 살펴보면 “동물진료업무는 어폐류의 진료를 제외하고는 수의사만이 할 수 있는 것”으로서 수의사의 업무를 법으로 보호하고 있으며 제11조(진료의 거부금지)에서는 “정당한 이유없이 동물진료업을 행하는 수의사가 동물의 진료요구를 거부할 수 없도록” 수의사의 의무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다.

제12조(진단서 등)내지 제13조(진료부 및 검안부)는 진단서, 검안서, 폐사진단서 및 진료부, 검안부의 작성, 교부 및 보존에 대한 수의사 의무에 대한 조항이며, 제15조(진료기술의 보호) 및 제16조(기구 등의 우선 공급)는 수의사의 권리보호에 대한 조항이라고 하겠다.

그렇다면 동물병원개설의 첫단계인 제17조(개

\* 농립수산부 가축위생과

설)에 대하여 분석을 하여 보겠다. 제1항 “수의사는 이 법에 의한 동물병원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동물진료업을 행할 수 없다”는 규정은 제10조의 “수의사만이 동물진료업(어폐류제외)을 행할 수 있다”는 규정을 구체화한 것으로서 동물병원을 개설한 수의사만이 동물진료업을 행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하겠으며 수의사를 종업원으로 고용한 경우 고용된 수의사도 동물병원을 개설한 수의사로 간주된다.

다만 이 경우에 있어서 동물병원을 개설치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양돈장, 목장, 동물원 등에 고용된 수의사 등은 자기소유 가축에 대한 진료행위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진료행위를 하는 것이 아닌 자가치료로 보아 동물진료업의 범위에서는 제외된다고 하겠다.

제2항은 동물병원을 개설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제3항 및 제4항은 제2항에서 규정한 동물병원개설자의 신고·허가 요건에 대한 규정이라 하겠다.

제18조(휴업·폐업의 신고)는 관할 도지사로 하여금 관내의 동물병원 개설현황 등을 파악하도록 하여 동물병원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의무조항이며 제19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는 동물진료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항이라고 하겠다.

제20조(진료보수)는 시·도별, 지역적인 여건에 따라 진료보수에 차등을 두어 진료수가의 부당징수를 방지하기 위함이며 제30조(지도와 명령)은 농림수산부장관의 동물의 진료시책상 필요시 또는 공중위생상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시 수의사에 대하여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이라 하겠으며, 제32조(보고 및 업무감독)는 동물진료업을 수행하는 수의사로 하여금 진료시 발견한 특별한 질병 등(가축전염병예방법 제4조(병든가축의 신고) 및 제11조(죽은 가축의 신고)와 연계 됨)과 자신이 진료한 진료상황 등에 대하여 보고토록 하여 지역별 동물질병 발생상황 등을 평가·분석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이라 하겠으며, 제33조(면허의 취소 및 자격정지), 제34조(개설허가의 취소 등), 제35조(과대광고의 금지)는 동물병원 개설 수의사에 대한 제재조항이라 하겠다.

이제 동법 시행령에서 동물병원과 관련된 조항을 살펴보면 제13조(동물병원의 시설기준)에서 진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일반적인 시설기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제19조(지도와 명령)에서는 법 제30조(지도와 명령)에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제20조(권한위임)에서 시·도지사가 관할지역의 실정에 맞는 가축방역 및 진료업무에 필요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하여 원활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20조에 의한 권한위임이 아니더라도 동물병원의 개설신청·허가업무, 휴·폐업 신고접수, 보고 및 업무감독, 개설취소 업무 등은 법에서 시·도지사의 업무로서 규정하고 있다.

동법 시행규칙에서 동물병원과 관련된 조항을 살펴보면 제5조(품위손상행위)에서는 법 제33조 제2항 면허정지 사유 요건중 품위손상행위를 정의하고 있으며 제11조(동물병원 개설신고) 제12조(동물병원의 개설허가)에서 개설에 필요한 구비조건 및 절차를 규정하고, 제13조(휴업·폐업의 신고)에서는 동물병원 휴업·폐업시의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제14조(동물병원의 시설기준)에서는 동물병원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 장비에 대하여 세밀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다.

제15조(진단서의 기재사항), 제16조(폐수검안등), 제17조(출산증명서 등), 제18조(처방전의 기재사항), 제19조(약제용기 등의 기재사항), 제20조(진료부와 검안부)는 동물진료업을 행하는 수의사로서 작성, 교부, 비치하게 되는 각종 서류에 대한 규정이라 하겠으며, 제21조(진료보수)는 진료수가 결정 등에 대하여, 제23조(질병진료실적보고)는 동물병원 및 시·도지사의 질병진료상황에 대한 보고와 관련된 규정이라 하겠다.

이상 수의사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중 동물병원과 관련된 조항을 검토하였으며, 위에 열거한 조항중에는 우리나라의 발전에 따라 현실과 동떨어진 규정도 없다고는 못하겠으나 가축방역의 최일선에서 종사하는 동물병원개설 수의사들의 권리·의무에 대하여 현재의 규정으로서도 충분하다 하겠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수의사법에 의한 동물병원 개설요건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다. 먼저 동물병원의 개설신고부터 보면 우리나라 여전상 통상 “1동물병원 1수의사”식으로 대부분이 개설신고가 되고

있으나 2명 이상의 수의사가 공동대표로 신고하는 경우가 간혹 있다.

물론 해당 시·도에서도 심사숙고하여 신고필증을 교부하였겠으나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별지 제9호 서식에서 신청인란과 수의사 및 기타 종업원수란이 별도 설정되어 있는 점과 동물병원에 대한 불이익처분시 개설신청인 2명 모두 처분을 받아도 타당한 것인지를 고려, 이는 좀 더 신중히 생각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수의사를 종업원으로 고용한 경우 반드시 신고내용에 인적사항 등을 제대로 기재하여 종업원이 법제17조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여야 할 것이다.

수의사법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규정하고 있는 동물병원 시설기준에 의거 바닥의 재질, 채광 및 환기상태, 배수시설, 상수도시설 등의 완비 및 진료실, 처치실, 조제실 등을 정확히 구획하여야 할 것이며, 그의 진료대, 냉장고, 무영조명 등 소독장비, 기타 진료기구장비와 청결유지와 위생관리에 필요한 장비를 펼쳐 완비하여 동물병원에 대한 일반인식을 전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환경보호와 가축전염병 예방측면에서 동물의 처치시 발생하는 일회용주사기, 거즈, 봉대 및 적출물 등에 대한 처리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휴업·폐업 신고의 경우 수의사법 제34조(개설허가 취소 등) 제3호 규정에 의거 30일 이내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일부 개업수의사 중에

는 폐업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타 시·도에 동물병원을 개설하여 2개소의 동물병원을 운영하는 것으로 처리되는 등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으므로 수의사는 권리뿐만 아니라 주어진 의무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할 것이다.

이외 동물병원에서 유의할 점으로는

- 수의사면허증 및 동물병원 개설신고필증 제시
- 진단서, 처방전 및 약제용기 등 기재사항 적정 기재
- 진단서의 연도별 일련번호 기재 여부 및 부분의 3년 비치
- 진료부 및 검안부 비치 및 기재사항 적정기재
- 질병진료실적의 적기 보고
- 적당한 사유없는 진료거부행위의 금지
- 자기가 진료 또는 검안하지 아니한 진단서 또 는 검안서 교부행위의 근절
- 수의사로서의 품위손상 행위 금지
- 기타 행정지시사항 등의 이행 등이 있으며, 위에 기술한 사항은 동물병원을 개설한 수의사라면 준수하여야 하는 법적 요구사항이므로 위 사항을 준수하고 있는가를 늘 염두에 두고 진료서비스의 향상을 도모, 축산발전 및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하여야 할 것이며 끝으로 수의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제한이 1995년도에 개방예시가 된 현 시점에서 동물병원도 국제경쟁력 강화에 더욱 힘을 기울여 국내에서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실력을 인정받는 수의사가 될 수 있도록 자신의 업무에 충실향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